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4136
----------	-------

제안연월일 : 2015. 3.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발의자 (제출자)	의안번호	회부일	상정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의원 등 11인	제4171호	'13. 3. 21.	제31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13. 4. 1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지만의원 등 10인	제9980호	'14. 4. 2.	제331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15. 2. 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숙의원 등 10인	제10637호	'14. 5. 16.	제329회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2014. 11. 1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제11022호	'14. 6. 30.	제329회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2014. 11. 1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림의원 등 11인	제11295호	'14. 8. 4.	제329회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2014. 11. 1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의원 등 11인	제11307호	'14. 8. 6.	제329회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2014. 11. 1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0인	제13695호	'15. 1. 16.	제331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15. 2. 9.

건 명	발의자 (제출자)	의안번호	회부일	상 정 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학용의원 등 10인	제13705호	'15. 1. 19.	제331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15. 2. 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제13719호	'15. 1. 19.	제331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15. 2. 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의원 등 16인	제13738호	'15. 1. 20.	제331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15. 2. 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익의원 등 10인	제13881호	'15. 2. 3.	제331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15. 2. 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1인	제13895호	'15. 2. 3.	제331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15. 2. 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등 10인	제13915호	'15. 2. 4.	제331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15. 2. 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숙의원 등 10인	제13916호	'15. 2. 4.	제331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15. 2. 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제13934호	'15. 2. 6.	제331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15. 2. 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제13936호	'15. 2. 6.	제331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15. 2. 9.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16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5. 2. 24)에서는 법안 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보호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양육되어야 하는 영유아의 권리도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됨.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자에 대한 제재 및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할 뿐 아니라,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에 이들의 인성함양 과목을 추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을 막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한편,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을 두도록 하고 위법행위 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하도록 함.

또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재난대비 안전 등 종합안전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해외 체류아동의 경우

양육수당 지원을 정지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보육비용 신청과 관련하여 서면고지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고지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두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하고,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5조의4, 안 제44조제2의2호 및 안 제56조제2항제4호 신설)

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를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

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안 제15조의5, 제54조제2항)

마.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 16조)

바.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됨(안 제18조의2 신설)

사.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재난대비 안전, 인성함양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3조의2)

아.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심의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5조)

자. 양육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 과도한 복지지원을 방지하고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4조의2)

차.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이 보조금의 부정 교부, 아동학대 행위 등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및 제47조)

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나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위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함(안 제49조의3 제1항 및 제2항)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육전문요원”을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으로 한다.

제15조 단서 중 “다만, 놀이터 설치와 비상재해대비시설과”를 “다만,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로, “제15조의2와 제15조의3”을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로 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 및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②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4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③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16조제5호 중 “금고”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외의 죄로 금고”로,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본문 중 “금고”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외의 죄로 금고”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2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6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

고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7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보육교직원”을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으로 한다.

②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③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방법·내용 등”을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등”으로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약물의 오남용 예방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어린이집 원장의 인성함양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방법·내용 등”을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등”으로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약물의 오남용 예방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보육교사의 인성함양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의3제1항 전단 중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사람이 제

16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 및 제20조제1호의 결격사유(제16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제16조제6호의2, 제7호, 제8호 및 제20조제1호의 결격사유(제16조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2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① 보호자는 영유아의 보육환경·보육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관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

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34조의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식·시기·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중 “비용”을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 등 비용”으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자
2. 제24조제1항 및 제3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33조에 따른 급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45조제1항제4호 중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로, “금지행위”를 “아동학대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설치·운영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나 조사·검사를 실시한 후 지체없이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

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행정처  
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5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이 어린이집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  
치·운영한 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  
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  
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확인을 요  
청하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  
류를 발부할 수 있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을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으  
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  
직원에게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내”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로 한  
다.

제4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1.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제3호 이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년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년(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표할 수 있다”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공표할 수 있다”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5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2.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한 자
- ③ 제15조의5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5.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형이 확정된 사람 또는 제45조에 따라 최초로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외 체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

른 해외체류기간은 이 법 시행 후 해외에 체류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교육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제16조가 적용되는 사람에 대한 교육명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이 법 시행 전에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은 제42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으로 본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책임) ① ~ ③ (생략)</p> <p style="margin-left: 20px;"><u>&lt;신 설&gt;</u></p> <p>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u>보육전문요원</u> 등을 둔다.</p> <p>③ (생략)</p> <p>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u>보육전문요원</u>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조(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 ----- -----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 ----- ----- ----- ----- ----- ----- -----</p>



<신 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

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②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4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③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 1. ~ 4. (생략)
-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하여야 한다.

④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16조(결격사유) -----  
-----  
-----.

- 1. ~ 4. (현행과 같음)
- 5.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외의 죄로 금고-----  
-----  
-----  
-----5년-----

- 6.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외의 죄로 금고-----  
-----  
----- <단서 삭제>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생략)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생략)

<신 설>

<신 설>

6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  
-----5년-----  
-----

8. -----  
-----  
-----  
-----제3조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현행과 같음)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③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②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教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③ (생략)

<신 설>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

④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

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① -----

-----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약물의 오남용 예방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어린이집 원장의 인성함양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  
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생략)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교육명령) ① 보건복지

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  
방법 등-----  
-----.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① -----  
-----  
-----.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  
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약물의 오남용 예방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보육교사의 인성함양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  
방법 등-----  
-----.

제23조의3(교육명령) ① -----

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사람이 제16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 및 제20조제1호의 결격사유(제16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대하여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② (생략)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① (생략)  
 ②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제16조제6호의2, 제7호, 제8호 및 제20조제1호의 결격사유(제16조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 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신설>

4. ~ 9. (생략)

<신설>

⑤ (생략)

<신설>

제34조의2(양육수당) ①·② (생략)

<신설>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 9. (현행과 같음)

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5조의3(보호자의 어린이집 참

관) ① 보호자는 영유아의 보육환경·보육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관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양육수당)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

<신 설>

③ (생 략)

<신 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

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34조의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식·시기·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  
-----

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 (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신 설>

-----  
-----  
-----  
-----  
-----  
-----  
-----  
-----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 등  
비용-----  
--.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자
2. 제24조제1항 및 제3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33조에 따른 급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2. (생략)

<신설>

3. ~ 8. (생략)

다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3. ~ 8. (현행과 같음)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5. (생략)

② (생략)

<신설>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  
 -----  
 -----  
 -----  
 -----  
 -----  
 -----  
 -----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아동학대 행위-----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설치·운



<신 설>

③·④ (생 략)

제45조의3(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생 략)

<신 설>

영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제1항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나 조사·검사를 실시한 후 지체없이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45조의3(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어린이집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 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1. ~ 4. (생략)
- <신설>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보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부할 수 있다.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 정지) -----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 1. ~ 4. (현행과 같음)
-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

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2. (생략)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2. (생략)

3.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4. ~ 8.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  
-----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1. 2. (현행과 같음)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4. ~ 8. (현행과 같음)

② -----  
-----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단서 삭제>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다른 어린이집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횡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법위반 이력과 명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횡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54조(벌칙) ① (생략)

-----  
-----  
-----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② -----  
-----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

---공표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제5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③ (생략)

제56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2.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한 자

③ 제15조의5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p>&lt;신 설&gt;</p> <p>③ (생 략)</p>	<p><u>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 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자</u></p> <p>5. <u>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u></p> <p>③ (현행과 같음)</p>
-----------------------------------	--